

# 공고

## 주 정무국 커미션, 선거, 및 입법과

### '2002 년 미 선거 보조법 402 (a) 항 [(section 402 (a) the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)]' 그리고 '펜실베니아주 선거법 1206.2 항 (Section 1206.2 of the Pennsylvania Election Code)' 에 의한 불평/불만 처리 절차

2003 년 12 월 9 일 자로, '주의회 (the General Assembly)'는 '주 정무국 [ Department of State (Department)]'으로 하여금 '커미션, 선거, 입법과 [Bureau of Commissions, Elections and Legislation (Bureau)]' 내에 'December 9, 2002 (P.L.1246, No.150), §11 법'이 추가된, "2002 미선거 보조법 타이틀 III {Title III of the Help America act of 2002 [HAVA] (Public Law 107-252, 42 U.S.C. § 15301 *et seq.*)} 시행에 관한 불평/불만 검토 절차법"인 '[ Pa. 선거법 § 1206.2 (a) (25 P.S. § 3046.2 (a) ]'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. 이 절차법은 'HAVA' 의 기금을 받는 주들은 'HAVA 402 (a)' 조항이 규정하는 바 대로 "주 기준 (State-based) 불평/불만 처리 시행 절차를 수립, 유지해야" 하는 강제 조항입니다. 참조: '42 U.S.C. §15512 (a)'. 본 통고의 목적은 '주 정무국'은 'HAVA 402 (a) 항' 그리고 '펜실베니아 선거법 1206.2 항 (section 1206.2 of the Pennsylvania Election Code)'이 요구하는 불평/불만 처리 절차가 '과 (the Bureau)'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입니다.

#### HAVA 타이틀 III

본 절차에 따른 불평/불만은 'Title III of HAVA, 42 U.S.C. §§ 15481-83'의 시행과 관련된 것이라야 합니다. 'HAVA 402 (a) 항' 그리고 '펜실베니아 선거법 1206.2 항'에 의한 불평/불만을 제출하기 전에, 불평/불만인은 주 또는 지방 선거 위원 또는 그 고용인들이 'HAVA 타이틀 III' (획일적이며 비차별적인 선거

기법 및 행정 요건과 관련하여) 을 위반했는지, 지금 위반하고 있는지, 또는 앞으로 위반할 것인지에 대해  
확증된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. 'HAVA 타이틀 III'를 포함하지 않은 기타 연방법 또는 주법  
위반에 대한 주장은 본 통고에 규정된 불평/불만 절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### **본 절차법에 의한 불평/불만 신고를 접수시키기 전에, 불평/불만인은 'HAVA 타이틀 III' 규정을 검토**

**하여야 합니다.** 그 내용을 요약하면, 'HAVA 타이틀 III'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**2004 년 1 월 1 일까지**, 모든 주들은 *잠정 투표 시스템*을 갖추어야 합니다. 'HAVA 302 (a) 항'에 의거해, 유권자가 투표하기를 원하는 관할 지구에서 투표 등록을 마쳤고, 연방직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공언하나, 그 사람의 이름이 그 투표소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공식적인 선거인 명단에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선거 위원이 그 사람은 투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면, 그 사람은 '섹션 302 (a)'에 규정된 잠정 투표를 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. '42 U.S.C. § 15482 (a)'. 'HAVA 302 (a) 항'은 또한 어떻게 잠정 투표가 이루어지고 처리되어야 하는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더해, 'HAVA 302 (c) 항'은 법원 명령 또는 다른 명령에 의해, 법이 정한 투표소 마감 시간 이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된 모든 투표자는 오직 잠정 투표에 의한 투표를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'42 U.S.C. § 15482 (c)'. 'Act 150 of 2002'가 추가된 '펜실베이니아 선거법 [25 P.S. § 3050 (a.4)] 1210 (a.4) 항'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잠정 투표 시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**2004 년 1 월 1 일까지**, 모든 주는 'HAVA 302 (b) 항' 이 규정한 일정한 *선거 정보*를 선거일에 투표 장소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. '42 U.S.C. § 15482 (b)'. 펜실베이니아 법은 'HAVA 302 (b)'에 부합 됩니다. 참조: '25 P.S. §§ 3042 § 3049 (a)'.
- **2004 년 1 월 1 일 까지**, 'HAVA 303 (b) 항'은 우편으로 등록하는 투표자들, 그리고 그 카운티에서 연방직 선거에 처음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은 선거 위원들에게 *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명서* 또는 *투표자의 이름과 주소가 쓰인 특정 신분 증명서*를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'42 U.S.C. §15483 (b)'. 이같은 신분 증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잠정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참조: '42 U.S.C. §15483 (b) (2) (B)'. 'HAVA ( 참조: 42 U.S.C. § 15484)'가 허용한바 대로, '펜실베이니아 법'은 'HAVA' 보다 더욱 엄격한 투표자의 신분 증명을 요구 합니다. '펜실베이니아 선거법 1210 (a) 및 1210 (a.1) 항'은. 그 선거 지구/관구/분구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려는 모든 선거인들은 선거 위원에게 규정된 사진 있는 신분 증명서, 또는 선거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사진 없는 신분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참조: '25 P.S. §§ 3050 (a) & 3050 (a.1)'. 'HAVA' 에 일치되나, 이 같은 투표자 신분 증명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선거인들이 잠정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 참조: '25 P.S. § 3050 (a.2)'.
- **2004 년 1 월 1 일까지**, 'HAVA 303 (b)(4) 항'은 *우편 투표자 등록 서식*에 일정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참조: '42 U.C. § 15483 (b)(4)'. '펜실베이니아 법'은 '303 (b)(4) 항'이 요구하는 정보를 투표자 등록 우편 신청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참조: '4 Pa. Code § 183.1'

- **2006년 1월 1일까지**, 연방직 선거에서 사용되는 각 투표 시스템은 [HAVA 301 (a) (3) 항 (42 U.S.C. § 15481 (a) (3))]이 규정한 신체 불구자 접근권, 그리고 [HAVA 301 (a)(4) 항 (42 U.S.C. § 15481 (a)(4))]이 규정한 대체 언어 접근권 등을 포함한, [HAVA 301 항 (42 U.S.C. § 15481)] 에 명시된 기준들에 부합되어 되어야 합니다.
- **2006년 1월 1일까지**, 모든 주들은 'HAVA 303 (a) 항', '42 U.S.C. §15483 (a)항'이 규정한 전산화된 주 전역 투표자 명단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합니다. 이에는 전산화된 투표자 명단 보관, 기술적 보안 조치, 그리고 주 투표자 등록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최저 기준 등이 포함 됩니다. 참고: '42 U.S.C. §§ 15483 (a)(2)-(4)'. '펜실베니아 법'은 펜실베니아주가 '[전주 동일 투표인 등록부 (the Statewide Uniform Registry of Electors (SURE))]'로 알려진 주 전역 투표자 등록 전산화 시스템을 적절히 갖추어 2005년 1월까지 완전 개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참고: '25 Pa.C.S. §1222 '.
- **2006년 1월 1일/그 후**, 접수된 선거인 등록 신청서에 대해, 'HAVA 303 (a) (5) 항'은 (i) 만일 그 신청서에 현재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은 신청인의 운전 면허증 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, 또는 신청인이 현재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없고, 신청인의 사회보장 번호의 끝 4 자리 숫자 (신청서에 현재 유효한 운전 면허증도 사회보장 번호도 없다고 선언한 신청자는 제외)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; 그리고 (ii) 선거 위원들이 신청인이 제공한 번호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, 이의 접수 또는 처리를 금하고 있습니다. '42 U.S.C.15483 (a) (5)'.
- 'HAVA'는, '타이틀 III'에 의해 확정된 요건들이 "최저 요건 (*minimum requirements*)"이며, 각 주들은 그 것이 연방 요건 (Federal requirements)들에 상치되지 않는 한, "[Title III]에 확정된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" 선거 기법과 행정 요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'42 U.S.C.§15484'. 이에 덧붙여, 'HAVA'는 "[타이틀 III]의 요건에 부합되는 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선택은 주의 재량"에 일임하고 있습니다. '42 U.S.C. § 15485'

### HAVA 402 (a) 항

'HAVA 402 (a)(2) 항'은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는 주-기준 (State-based) 불평/불만 처리 행정 절차를 마련, 계속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(A) 그 처리 절차는 획일적 (uniform) 이고 비차별적 (nondiscriminatory) 이어야 한다.

(B) 그 절차에 따라, 누구라도 'HAVA 타이틀 III' 의 어떤 규정을 위반 (과거에 일어났던 것,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, 또는 앞으로 야기될 것 등 포함) 했다고 믿는 사람은 불평/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.

(C) 이 절차에 따라 제기된 불평/불만은 반드시 서면 (in writing)으로 공증을 받고, 이를 제출하는 사람이 서명, 선서를 하여야 한다.

(D) [§ 402 (a) (2)] (B)에 따라, 주 당국은 이 불평/불만들을 통합 정리 하여야 한다.

(E) 불평/불만인의 요구가 있으면, 기록을 남기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.

(F) 그 절차에 따라, '타이틀 III'의 어떤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고 '주 (the State)'가 판단 한다면, '주' 당국은 적절한 구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.

(G) 그 절차에 따라, 어떠한 위반 사실도 없었다고 '주'가 판단 한다면, '주'는 그 불평/불만을 기각하고 그 절차의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.

(H) 불평/불만인이 그 결정 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, '주' 당국은 그 불평/불만이 접수된 날로 부터 90-일 간의 시효가 끝나기 전에 그 불평/불만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(I) 만일 '주' 당국이 [§ 402 (a)(2)(H)] 규정 에 의해 적용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면, 그 불평/불만은 ... '섹션 [402]' 목적으로 마련된 분규 해결 대체 (alternative) 절차법에 따라 60 일 이내에 해결되어 져야 한다. ... '섹션 [402]'에 의거해 확립된 불평/불만 처리 절차법에 따라 집행된 모든 의사록의 기록과 자료들은 분규 해결 대체 절차법에서도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.

#### 42 U.S.C. § 15512 (a) (2)

'HAVA 타이틀 II'에 의한 '필수 요건 변상 (requirements payments)'을 받기 위해서는, 주지사

또는 그의 지명인이 주 정무장관 (the Secretary of the Commonwealth)과 협의, 공조하에 '연방 선거 보조 위원회 [the Federal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(Commission)]에 "주 당국이 'HAVA 253 (b)'항이 규정한 필수 요건들을 준수 하였다'는 것을 증명하는 설명서"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

참조: '42 U.S.C. § 15403 (a)'. 'HAVA 253 (b) 항'이 규정한 필수요건들 중에는 '위원회 (Commision)'에

" '섹션 402'가 요구하는 획일적이고 비차별적인 행정적 불평/불만 처리 절차 이행 계획서" [(또는 '섹션 253 (b)(1)' 에 따라 제출된 '주 계획서(the State Plan)' 안에 포함] 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그리고 '섹션 402. 42 U.S.C. § 15403 (b)(2)'의 "필수 요건들을 충족 시키기위한... 절차"가 적절히 포함

되어 있어야 합니다. 펜실베니아주는 'HAVA 주 계획안 (HAVA State Plan)'에 'HAVA 402 항'의 이행 계획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펜실베이니아 선거 법 § 1206.2

'HAVA 402 항'을 이행하기 위해, 2002 년 12 월 '주의회 (the Legislature)'는 '페실베이니아 선거법에 '섹션 1206.2'를 추가 하였습니다. 서술한 바와 같이, '섹션 1206.2 (a)'는, 2003 년 12 월 9 일 까지 '커미션, 선거, 입법과 (the Bureau)' 내에 " '2002 미 투표 보조법 타이틀 III (Title III of the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)' 시행에 관한 불평/불만 검토 절차법"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'25 P. S. § 3046.2 (a)'. '주 정부국'은 "불평/불만인의 서명, 선서 진술서, 공증, 그리고 보조 서류의 첨부" 등을 요하는 불평/불만 신고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 상동 (Id.)

'섹션 1206.2 분항 (subsection) (b)'에서, 주의회는 지방 또는 카운티 고용인 또는 관리를 상대로 제기된 불평/불만을 다루는 다음의 추가적인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(1) '주 정부국'은 접수 삼 (3) 일 -주말/공휴 제외- 이내에 불평/불만서의 사본을 카운티 선거 위원회에 제공 하여야 한다.

(2) 주 선거위원회는 그 불평/불만인과 합의하거나, 또는 그 불평/불만서에 서면 답변을 접수 시킬 수 있는 이십 (20)일 간의 기간을 갖는다.

(3) '주 정부국'은 불평/불만인에게 회신 사본과 비공식 청문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(4) 비공식 청문회 요구가 있으면, 카운티 선거 위원회에 이를 통고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

(5) '주 정부국'은 불평/불만서가 접수된 후 구십 (90)일 이내에 최종 결정, 필요하다면 그 구제책을 공포해야 한다. 만일 '주 정부국'이 구십 (90)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공포하지 못한다면, 그 불평/불만 처리를 위한 분규 해결 대안 (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)을 마련해야 한다. 그 분규 해결 대안 처리는 그 개시 육십 (60) 일 이내에 완료 되어야 한다.

25 P.S. § 3046.2 (b)

'주 정부국'을 상대로 제기된 불평/불만은 다음의 절차가 적용 됩니다:

(1) '주 정부국'은 그 불평/불만 접수 삼 (3)일 -주말/공휴 제외- 이내에 '법률 자문실 (Office of General Counsel)'로 보내야 한다.

(2) “주 정무국은 그 불평/불만인과 합의, 또는 그 불평/불만서에 서면 답변을 접수 시킬 수 있는 이십 (20)일 간의 기간을 갖는다.

(3) 법률 자문실은 불평/불만인에게 회신의 사본과 비공식 청문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(4) 비공식 청문회 요구가 있으면, ‘주 정무국’에 에 이를 통고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

(5) 법류 자문실은 불평/불만서가 접수된 후 구십 (90) 일 이내에 최종 결정, 필요하다면 그 구제책을 공포해야 한다. 만일 법류 자문실이 구십 (90)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공포하지 못한다면, 그 불평/불만 처리를 위한 분규 해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. 그 분규 해결 대안 처리는 그 개시 육십 (60) 일 이내에 완료 되어야 한다.

#### 25 P.S. § 3046.2 (c)

‘섹션 1206.2’에 의한 결정은 ‘행정 기관법 (the Administrative Agency Law), 2 Pa. C.S. 5, subch. A, 및 Ch. 7, subch. A’ 에 따른 행정 판결이 아니다. 참조: ‘25 P.S. § 3046.2 (d)’; 그리고

‘섹션 1206.2 (b)’에 의한 ‘주 정무국’ 결정은 ‘42 Pa. C.S. § 763’ 하의 항소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

(정부 기관의 직접 항소와 관련해) 참조: ‘25 P.S. § 3046.2 (e)’. 이 보단 오히려, 쌍방은 ‘섹션 1206.2’에 의거해 지방 또는 카운티 관리 또는 그 고용인을 상대로 제기한 불평/불만을 결말짓는 ‘주 정무국’의 최종 명령에 대한 상소를 선거 위원회가 위치한 카운티 민사 법원에 새로이 (de novo) 제기할 수 있다. 상동(Id.)

이에 반해, ‘subsection (c)’에 의한 법률 자문실 (the Office)의 결정-‘행정 기관법 (Administrative Agency Law)’에 의한 판결은 아니지만-은 ‘42 Pa. C. S. § 763’ 에 의거해 주 법원의 상소심 (appellate review)을 필요로 하는 기관 결정이다. 참조 ‘25 P.S. § 3046.2 (f)

#### 불평/불만 신고서

‘주 정무국’이 규정한 불평/불만 신고서는 본 통고서의 ‘부록 (Appendix) A’와 같습니다. 불평/불만 신고서는, 210 노스 오피스 빌딩, 해리스버그, 펜실베니아 17120 ( 210 North Office Building,

Harrisburg, PA 17120 ) 에 위치한 '과 (the Bureau)' 사무실 (717) 787-5280 으로 전화; 또는

RA-BCEL@state.pa.us.에 이메일로 요청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. 불평/불만 신고서는 또한 주 정무국 웹 사이트 [www.dos.state.pa.us](http://www.dos.state.pa.us).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접수 그리고 처리

불평/불만 신고서 원본과 사본 2 부를 해리스버그 '과 (the Bureau)' 사무실에 접수 시켜야 합니다  
접수 즉시, '과' 직원이 그 신고서를 검토, 불평/불만인의 서명, 공증받은 필요한 선서 진술서,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불평/불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. 신고서가 적절한 양식으로 되어 있으면, 이를 수용해 불평/불만 신고서 기록에 올립니다. 만일 그 신고서가 불완전하면, '과'에서는 신고자에게 결핍된 것을 교정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.

지방 또는 카운티 관리 또는 그 고용인을 상대로 한 불평/불만 신고서를 접수한 후 삼 (3) 일-주말/공휴일 제외- 이내에, '과'에서는 그 신고서 사본을 적절한 조치 또는 회신을 하도록 해당 카운티 선거 위원회에 보냅니다. 만일 그 불평/불만 신고서가 '주 정무국'을 상대로 한 것이면, '과'에서는 접수 삼 (3) 일-주말/공휴일 제외-이내에 '법률 자문실'에 회송 합니다.

### 답변 및 비공식 청문회 기회

불평/불만 신고서를 접수한 후 20 일 이내에, 불평/불만인과 그 응답자인 카운티 선거 위원회는 그들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'과'에 통고하거나; 또는 선거위는 그 신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관하고, 원본과 사본 2 부를 '과'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불평/불만이 '주 정무국'을 상대로 제기된 것일 경우, 신고자와 '주 정무국'은 20 일 내에 그들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'법률 자문실 (Office)'에 통고 하거나; 또는 '주 정무국'은 '자문실'에 답변서를 제출, 그 원본과 사본 2 부를 '자문실'에 제공 하여야 합니다.

선거 위원회로부터 답변서를 받는 즉시, '과 (the Bureau)'에서는 위원회 답변서 사본을 신고자에게 제공하고, '선거법 1206.2 (b)항 [(section 1206.2 (b) of the Election Code)]'이 규정한 바 대로 비공식 청문회를 요청할 것을 종용할 것 입니다. '주 정무국'을 상대로 한 불평/불만에 대한 '주 정무국'의 답변서를 받는대로, '법률 자문실'은 '주 정무국'의 답변서 사본을 신고자에게 제공하고, '선거법 1206.2 (c)항 [(section (c) of the Election Code)]'이 규정한 바 대로 비공식 청문회를 요청할 것을 종용할 것입니다.

### 비공식 청문회

불평/불만 신고인이 '선거법 1206.2 (b) 항 [section 1206.2 (b) of the Election Code]'에 의거, 비공식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, '주 정무국'은 이를 선거 위원회에 통고하고, 이에 참여를 권유할 것 입니다. 그 후, '주 정무국'은 'HAVA 402 (a) (2) 항', '선거법 1206.2 (b) (5) 항', 그리고 '행정 시행 절차 일반 규칙, 1 Pa. Code Part II (General Rules of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, 1 Pa, Code Part II)'의 적용 가능한 조항들이 규정한 바에 따라 청문회 관리를 배정하고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.

불평/불만 신고인이 '선거법 1206.2 (c) 항 [(Election Code section 1206.2 (c)]'에 의거, 비공식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, '주 법률 자문실'은 이를 '주 정무국'에 통고하고 이에 참여를 종용할 것 입니다. 그 후, '주 자문실'은 'HAVA 402 (a) (2) 항', '선거법 1206.2 (c) (5) 항' 그리고 '행정 시행 절차 일반 규칙 1 Pa. Code Part II (General Rules of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1 Pa. Code Part II)'의 적용 가능한 조항들이 규정한 바에 따라 청문회 관리를 배정하고 일을 진행할 것 입니다.

### 처리

위임받은 청문회 관리는 'HAVA 402 (a) (2) (F)-(H) 항', 그리고 '섹션 1206.2 (b) (5)', 또는 '선거법 1206.2 (c) (5) 항'이 규정한 바대로 그 방법과 시간에 맞추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 입니다.

## 분규 해결 대안

'주 정무국' 또는 '과'에서 '섹션 1206.2(b)(5)' 또는 '선거법 1206.2 (c) (5) 항'에 각각 규정된 시한 내에 최종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, '주정부 법률 자문단 (General Counsel of the Commonwealth)'이 지시하는 대로 분규 해결책 대안이 마련될 것 입니다.

---

페드로 A. 콜테스 (Pedro A. Cortes)  
주 정무국장